

# 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46,590,511	22,397,715
일반회계	537,653,989	16,129,620
일반회계	537,653,989	16,129,620
기타특별회계	89,104,919	2,673,148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9,876,451	596,294
주택사업특별회계	2,704,101	81,123
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	3,364,321	100,930
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	337,000	10,11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1,005,230	30,157
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	1,402,741	42,082
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9,224,084	276,723
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	5,837,456	175,124
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45,353,535	1,360,606
공기업특별회계	119,831,603	3,594,948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82,833,903	2,485,017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6,997,700	1,109,93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(해당없음)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986,99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8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·도비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